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2042345 판결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서울 고 등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8나2042345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36733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201972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보조참가에 따른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한편 C는 2000. 9. 20.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D은 2011. 12. 6.부터 2014. 3. 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2014. 4. 18.부터 2015 4. 17.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C는 자신이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2012. 12. 31. 위 회사의 계열사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매매대금 6억 원에 피고가 발행한 액면가 1만 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6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를 D으로 하였다. C는 2013. 1. 25. D과 이 사건 주식을 D에게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D으로 하여금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6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8. C의 동생인 G, K을 만나, 피고 발행주식 총수 325,000주 운데 295,000주(C 명의로 된 12만 주, C의 동생 G 명의로 된 9만 주, J 주식회사 명의로 된 25,000주, 이 사건 주식 6만 주)와 함께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취지의 기업인수합병 협상(이하 '이 사건 인수협상'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당시 원고는 그 대금으로 210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한편 D은 이 사건 인수협상 전인 2013. 8. 5. C의 요구로 그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6억 원을 입금하였고, 2013. 9. 24.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체납국세 256,986,100원을 대납하였으며, 2013. 10. 25.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D은 2014. 3. 5. 열린 주주총회에서 피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되자, 피고의 회사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발행된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고 한다)을 꺼내어 가져갔다.

바. 원고는 2014. 4. 10.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 당시 D은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합계 956,986,100원(= 6억 원 + 256,986,100원 + 1억 원)을 지출하고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말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주식양도계약서 등 처분 문서는 물론 그 주장과 같이 돈을 지출한 사실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원고에게 제시하지 않았고, 원고도 D에게 그와 같은 자료가 있는지 묻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5, 7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 환송 전 이 법원 증인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다. 설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권을 점유하고 있던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 사건 주권을 인도받은 것으로서, D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선의취득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주식은 피고 대표이사인 C가 D의 명의를 차용하여 매수하면서 D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만을 신탁하여 둔 것에 불과하여 D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승계취득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 사건 주권을 인도받을 당시에 D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선의취득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승계취득 주장

1)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개서 등의 절차를 밟았는지에 관계없이 주주가 되는 반면,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주식의 양수 등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그 명의신탁된 주식의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권리자라고 할 것이고, 무권리자로부터 그 주식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선의취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등 참조).

C가 2013. 1. 25.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D은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신탁받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볼 수 없어 무권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승계취득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D과 C가 2013. 8. 5.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D이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D이 2013. 8. 5. C의 요구에 따라 C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6억 원을 입금하였고, 2013. 9. 24. 피고보조참가인의 체납 국세 256,986,100원을 변제한 후, 2013. 10. 25. C에게 1억 원을 더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환송 전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자신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급히 10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마련해 달라고 D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D은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받아 매수할 당시 C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6억 원을 돌려줄 테니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소유로 하겠다고 말한 사실, 그러나 C는 위와 같은 D의 제안을 승낙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 6억 원은 D과의 사적 거래관계에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D이 2013. 8. 5.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6억 원을

C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C와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선의취득 주장

1)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즉 종전 소지인이 무권리자 또는 무능력자라거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그리고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8684 판결).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선의취득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인수협상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한 원고 회장 N는 기업인수·합병 전문가인 점, 이 사건 인수협상 당시 협의된 주식양도대금이 합계 210억 원에 달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주주 구성 등에 관하여 상당한 조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G, K로서도 위 협상 과정에서 피고 회사를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 주식의 약 20.3%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의 C 소유임을 원고에게 밝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인수협상 당시 D가 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협상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② 그런데 D는 이 사건 인수협상이 결렬된 때로부터 불과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자신이 C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그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원고 측에 제시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협상 이전인 2013. 8. 5. 자신이 C에게 6억 원을 지급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D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인수협상을 하였던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인지에 관한 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정으로 보인다.

③ 더욱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인수협상 상대방이었던 G, K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C가 이 사건 주식을 D에게 양도하였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D가 이 사건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현종 성충용(재판장) 최현종

별 지

주식 목록

-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B(피고)
- 1. 주식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1. 권 면 액 : 1주당 1만 원
- 1. 주 주 명 : D
- 1. 주 식 수 : 6만 주. 끝.